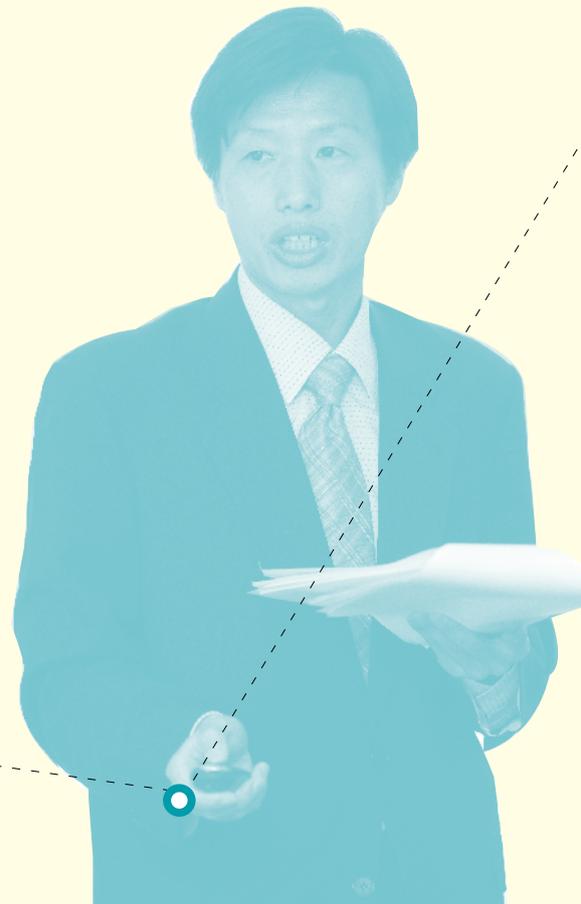


지난 5월 26일 ESCO협회에서는 'ESCO 팩토링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산은캐피탈 신형철 팀장의 교육이 열렸다. 팩토링의 개요에서부터 채권양도, 팩토링 실무에 이르기까지 ESCO 팩토링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이번 교육은, 참가자들로부터 ESCO 팩토링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달 교육의 주인공인 신형철 팀장을 만나 ESCO 팩토링에 대해 보다 자세히 들어보았다. 취재 편집실

ESCO사업의 활성화를 돕다

ESCO팩토링의 실제





ESCO 업체에 득이 되는 팩토링

팩토링(Factoring)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 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Factor가 양수받아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해 주는 금융 서비스다. 국내에서 Factor 역할을 하는 기관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 받은 금융기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여신전문금융기관 등이 있다. ESCO팩토링은 이러한 팩토링 방식을 ESCO사업에 적용시킨 개념으로서, ESCO사업으로 발생한 공사매출채권 즉 성과배분액에 대한 ESCO의 권리를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ESCO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는 ESCO팩토링이 많이 보급되었으나 아직까지도 팩토링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정책자금을 쓰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팩토링 제도를 통해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팩토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쉽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기업들이 팩토링을 제대로 이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교육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신형철 팀장은 기업들이 팩토링 활용을 제대로 하



는 데 도움을 주고자 교육을 열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밝힌다.

기업 입장에서 팩토링을 이용했을 때의 장점은 많다. 우선 팩토링 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경우 제일 큰 장점은 부채비율을 증가시키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ESCO 공사 후 발생하는 장기간의 매출채권 회수노력을 금융기관 쪽에 넘김으로써 본연의 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회전기간이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우량 에너지 이용자들의 공사매출채권을 양도하여 ESCO팩토링시 타 담보의 제공없이도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점은 담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이 팩토링의 절차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 팩토링의 주요절차는 금융기관과 ESCO공사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 사실을 에너지 이용자에게 통지한 후 에너지 이용자로부터 승낙을 얻으면 된다. 이는 민법 제449조부터 제451조에 따른 행위로서 채권양도의 법률적 절차로 생각하면 된다.

다시 정리하자면,

① 팩토링 회사의 거래처는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을 팩토링 회사에 양도하기로 약정한다.(상환청구권 없이 매출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하는 형식이 된다.) → ② 팩토링 회사는 거래처인 판매업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양수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 ③ 팩토링 회사가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신용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④ 판매한 회사는 구매자



에게 당해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통지하고 대금을 직접 팩토링 회사에 지급하도록 조치한다. →⑤ 팩토링 회사는 구매시점 또는 초회 할부금을 지급받을 때 매출채권의 액면금액에서 할인액 및 수수료를 공제한 후 거래처에게 이를 지급한다. → ⑥ 팩토링 회사는 매출채권 관리·회수대행, 구매자 채무의 회계처리 및 지급독촉, 양도받은 범위 내에서 대출, 경영 컨설팅을 수행한다.



신용이 우량한 에너지 이용자 발굴이 필요

팩토링의 종류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1) 상환청구권에 따른 분류에는 상환청구부 팩토링(구매자가 상환을 하지 못하면 판매자가 상환의무를 지는 팩토링)과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구매자가 상환하지 않더라도 판매자가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팩토링)이 있으며,
- 2) 거래 성격에 따른 분류에는 매각 거래(양도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전 (조건-①자산의 분리성, ②권리의 실질적 이전, ③효율적인 통제권))과 차입거래(실질적으로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면에서 접근하여 도입할 수 있는 팩토링 제도를 에스코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신형철 팀장은 이렇게 말한다.

“ESCO업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담보여력이 많지 않으므로 정책자금이라 할 지라도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ESCO영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영입이 활성화될수록 차입금이 크게 증가하여 부채비율 상승으로 추가적인 공사수주가 어렵기도 하지요.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ESCO업체들이 팩토링을 도입하고 추진해야 하며 팩토링을 하기 위해선 신용이 우량한 에너지 이용자들을 발굴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통상 팩토링의 대상이 되는 어음이나 비어음채권은 발행자의 신용도가 높아야 하므로 일반 중소기업들이 팩토링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ESCO팩토링의 경우 신용이 우량한 에너지 이용자들(관공서나 아파트 등)이 ESCO들의 발주처였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공사매출채권을 쉽게 양수할 수 있어서 현재와 같이 ESCO팩토링 제도가 보편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ESCO팩토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이용자의 신용이 우량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이용자들이 점차 다변화되어 가고 있어 중소 ESCO기업들이 ESCO팩토링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죠. 따라서 당사에서는 중소기업들이 ESCO팩토링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보강 방법으로 보험 상품을 도입하는 등 ESCO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형철 팀장은 에스코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ESCO기업들도 ESCO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이 있다면 언제라도 의견을 내줄 것을 당부했다.

팩토링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경우
제일 큰 장점은
부채비율을 증가
시키지 않고 자금
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